

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(과태료)
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12. 27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공고기간 : 2024. 12. 27. ~ 2025. 1. 13.
- 2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3. 공고내용

처분사항	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통지	
당사자	송*준[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 16번길 22, *동 ***호(석남동, 신화파크빌)]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건 설기 술진 흥법 위반 행정 처분 (과 태 료) ① 위 반내 용 :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② 교육종류 :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(최초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과태료 250,000원	
법적근거	-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, 제91조(과태료)제3항제1호 -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[별표11] 법적 과태료 금액 : 500,000원	
납부 기한	2025. 1. 31.	
납부 방법	인천 서구청 도로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가상계좌 등을 안내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	
문 의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(도로과)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, 본관 4층 도로과 건설행정팀
	연락처	032-560-4484